
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4. 1. 1.] [대통령령 제34021호, 2023. 12. 26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 이유】

제정·개정문

전체 제정·개정 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「관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,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10개 물품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6개의 물품은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,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7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,

할당관세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, 닭고기는 2024년 3월 31일까지, 계란가공품 등 12개 물품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고,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석영유리기판 등 64개 물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되, 그 중 매니옥칩과 설탕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

제정·개정 이유

전체 제정·개정문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(인)

2023년 12월 26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

● 대통령령 제34021호
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본칙 중 "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"를 "별표 1부터 별표 4까지"로 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5부터 별표 1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)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제3조(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